

●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17호

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(기간연장)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하 천 명: 영산강(국가하천)
2. 위 치: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01-2
3. 점용목적: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 및 배수문 설치
4. 점용면적: 102m²
5. 점용개요: 신창1배수통문 설치
6. 점용기간: 당초 - 2008. 12. 8. ~ 2013. 12. 7.(5년)
 연장 - 2013. 12. 8. ~ 2019. 12. 7.(6년)
7. 피허가자: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